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며, 외사국 및 공공안녕정보국을 각각 국제협력관 및 치안정보국으로 개편하고,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에 통합하면서 수사국에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하면서 과학수사관리관을 과학수사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안보수사국에 안보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대변인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전교통국에 두는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으로 개편하며, 경찰대학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통합하여 교무처로 개편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 및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 및 치안정보부로 개편하며,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등 15개 시·도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개편하고,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정·관리분야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치안분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95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7명, 경위 30명, 경사 24명, 경장 1명, 순경 2명)을 감축하면서 정원 4명(경무관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을 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1명으로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437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15명, 경감 51명, 경위 78명, 경사 89명, 경장 65명, 순경 98명, 7급 7명, 8급 18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면서 정원 2명(경무관 2명)을 감축하고,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1. ~ 9.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안전국·교통국·경비국·공공안전정보국·외사국”을 “범죄예방대응국·생활안전교통국·경비국·치안정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상황관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무관”을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① 범죄예방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

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조정·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 기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4.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11. 112신고제도의 기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12. 치안 상황의 접수·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3.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6.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7.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8.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9.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0.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조정
11.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2.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3. 스토킹·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4. 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5.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16.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17.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18.交通安全시설의 관리

19.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20.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21.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치안정보국) ① 치안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
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
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협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
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
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8. 그 밖에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형사국, 사이버수사국”을 “형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한다”를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분석

7.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8.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9.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11.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한다”를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7.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8. 범죄기록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한다”를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사보안업무의 지도·조정

10.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학에 교무처를 둔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처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교수요원 역량 개발 및 평가
4.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8. 직무교육과정 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9. 교육생 생활지도, 상훈·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 교육생의 급여품·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11.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3항 중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치안정보부”로, “생활안전부 및 교통지도부”를 “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치경찰차장을”을 “생활안전차장을”로, “자치경찰차장 순”을 “생활안전차장 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치안정보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경찰차장은 생활안전부 및 교통지도부”를 “생활안전차장은 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치안정보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치안정보부”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7.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8.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 제4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반부패범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사보안업무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4.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112신고 접수·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11. 112제도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12.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제52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3.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5.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7. 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 도로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9.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10.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11.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일반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

12.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제53조제1항 중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 중 “강력범죄수사대”를 “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한다.

제63조제2항 후단 중 “58명”을 “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으로, “51명”을 “49명”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580명”을 “5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29명”을 “526명”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9장(제6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을 둔다.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국장을 보좌한다.

④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3의 대구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대구성서경찰서”를 “대구수성경찰서”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930”을 “1,82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7”을 “1,117”로 하며, 치안감 “12”를 “11”로, 경무관 “4”를 “6”으로, 총경 이하 “1,198”을 “1,097”로 하고, 일반직 계 “709”를 “70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를 삭제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685”를 “683”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207”을 “134,30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825”를 “129,925”로 하며, 치안감 “18”을 “19”로, 경무관 “76”을 “74”로, 총경 이하 “129,726”을 “129,827”로 하고, 일반직 계 “4,360”을 “4,36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25”를 “4,327”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6조제1항 관련)

1. 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생활안전교통국 2개 과	7명
2) 경무인사기획관 1개 담당관	2명
3) 수사기획조정관	1명
4) 수사기획조정관 1개 담당관	8명
5) 수사국 1개 과	2명
6) 형사국	1명
7) 국가수사본부 1개 담당관	6명
8) 국가수사본부 1개 과	1명
9) 미래치안정책국	1명

2. 경찰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1명
2)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1개 형사기동대 시·도경찰청 수사부장 11개 형사기동대	12명
3) 시·도경찰청 12개 생활안전부	12명
4) 경찰서 74개 범죄예방대응과	74명
5) 서울특별시경찰청 광역수사단	1명
6)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1명
7)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1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시·도경찰청)	90명
2)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71명
3)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16명

4)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329명
5)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00명
6)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163명
7)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명
8) 사건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15명
9) 기록물 업무(시·도경찰청)	76명
10)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85명
11)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65명
12)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시·도경찰청)	69명
13)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6명
14)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시·도경찰청)	41명
15)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35명
16)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40명
17)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90명
18) 디지털증거분석 업무(시·도경찰청)	43명
19)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38명
20)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25명
21) 국유재산 관리 업무(시·도경찰청)	45명
22)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6명
23)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60명
24) 사이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63명
25) 지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53명
26) 범죄예방 및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96명
27) 강력범죄수사 및 우범지역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69명

<u>경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7조제4항 관련)</u>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준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에 미 래치안정책국· <u>생활안전국</u> · <u>교 통국</u> · <u>경비국</u> · <u>공공안전정보국</u> · <u>외사국</u> 및 국가수사본부를 둔 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u>범죄예방대응국</u> · <u>생활안전교통국</u> · <u>경비국</u> · <u>치 안정보국</u> ----- --.
②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감 사관 각 1명을 두고, 경찰청 차 장 밑에 기획조정관·경무인사 기획관 및 <u>치안상황관리관</u> 각 1 명을 둔다.	② ----- ----- ----- ----- <u>국제협력관</u> -----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u>경무 관</u> 으로 보한다.	제5조(대변인) ① ----- <u>치안감 또는 경무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관) ① (생략)	제6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 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 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 항</u>	<u><삭 제></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9조(국제협력관) ① <u>국제협력관 은 경무관으로 보한다.</u> ② <u>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u>

제10조(치안상황관리관) ① 치안 상황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 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 한다. 1. 치안 상황의 접수·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 항 3. 112신고제도의 기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4. 지구대·파출소 상황관리업 무의 기획 5. 삭 제 <신 설>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 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 력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 는 업무 <삭 제>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① 범
---	--

	죄예방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 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 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 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조정 ·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 찰 기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4.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 도·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 한 사항
--	--

	8. 지구대·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11. 112신고제도의 기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12. 치안 상황의 접수·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조정·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 기획·운영 4.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7의2.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7의3.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7의4.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의5.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자치경찰	사항 4.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6.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7.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8.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9.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0.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조정 11.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2.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3. 스토킹·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제11조(생활안전국) ① 생활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11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3.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조정 및 결산에 관한			

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9.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0.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12.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3.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조정

14.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5.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6. 스토킹·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제12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5.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 기획 및 심사분석

16.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17.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18.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19.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20.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21.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삭 제>

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 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7.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제14조(공공안녕정보국) ① 공공안녕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

제14조(치안정보국) ① 치안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협 요인에 관한 정보

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그 밖에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제15조(외사국) ① 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8. 그 밖에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삭 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5.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외사보안업무의 지도·조정 7.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제16조(국가수사본부) ① (생략) ②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및 안보수사국을 둔다. ③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및 과학수사관리관 각 1명을 둔다. 제18조(과학수사관리관) ① 과학수사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형사국 -----. ③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삭 제>
---	--	--	---

② 과학수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2.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3. 범죄기록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

제19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9조(수사국) ① -----
---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
---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분석

7.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8.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9.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신설>

<신설>

제20조(형사국) ① 형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1조(사이버수사국) ① 사이버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분석

2.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11.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
제20조(형사국) ① -----
---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
---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7.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8. 범죄기록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

<삭제>

3.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6.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

제22조(안보수사국) ① 안보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제26조(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둔다.

② (생략)

제27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제22조(안보수사국) ① -----
-----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
---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외사보안업무의 지도·조정

10.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제26조(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처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학생지도부) ① 학생지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교수요원 역량 개발 및 평가

4.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8. 직무교육과정 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9. 교육생 생활지도, 상훈·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 교육생의 급여품·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11.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 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 및 징계 등 신분
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
업무

제32조(원장 및 교장) ①·② (생
략)

③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
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
한다.

④ (생 략)

제4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경무부·경비부·공
공안녕정보외사부·수사부·광
역수사단·안보수사부·생활안
전부 및 교통지도부를 둔다.

②·③ (생 략)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① 서울
특별시경찰청에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및 자치경찰차장을 두
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제32조(원장 및 교장)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치안감-----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하부조직) ① -----
-----치
안정보부-----
-----범죄예
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① ----

----- 생활안전차장을 ---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
경찰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
리한다.

② 공공안전차장은 경무부·경
비부 및 공공안녕정보외사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
한다.

③ (생 략)

④ 자치경찰차장은 생활안전부
및 교통지도부의 소관업무에 관
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제48조(공공안녕정보외사부) ①
공공안녕정보외사부에 부장 1
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6. (생 략)

7.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
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
는 정보활동

8.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외국경찰기관과의 교

----- 생활
안전차장 순-----
-----.

② -----
----- 치안정보부-----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활안전차장은 범죄예방대
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
-----.

제48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
부-----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8.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
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류·협력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 는 정보활동
9. <u>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외사보안업무</u>	<삭 제>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생 략)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현행 과 같음)
② 단장은 반부패·공공범죄수 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 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단장은 반부패범죄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 대·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 동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 장한다.
제50조(안보수사부) ① (생 략)	제50조(안보수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u>외사보안업무</u>
제51조(생활안전부) ① 생활안전 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51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 예방대응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u>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 획의 수립</u>	1. <u>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 획의 수립</u>
2. <u>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u>	2. <u>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u>

3. <u>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 찰에 관한 기획·운영</u>	찰에 관한 기획·운영
4. <u>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u>	3. <u>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u>
5.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 도 및 단속</u>	4. <u>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u>
6. <u>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u>	5.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 도 및 단속</u>
7. <u>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 한 사항</u>	6. <u>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u>
8. <u>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u>	7. <u>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 한 사항</u>
9. <u>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u>	8. <u>지구대·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u>
10. <u>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u>	9. <u>지구대·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u>
11. <u>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 련된 업무의 총괄</u>	10. <u>112신고 접수·지령 및 초 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 상황의 관리</u>
12. <u>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 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 한 업무</u>	11. <u>112제도 기획·조정</u> 에 관한 업무
13. <u>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 ·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u>	12. <u>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u> 에 관한 업무
제52조(교통지도부) ① 교통지도 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52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 안전교통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경무관으로 보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8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57명----- ----- ----- -----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 ----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 49명-----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	② ----- -----. -----.

경의 정원은 580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581명----- ----- ----- -----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52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 ----- ----- ----- ----- 526명----- -----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 설>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을 둔다.

-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
다.
- ③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4호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
국장을 보좌한다.
- ④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30</u>	<u>1,827</u>	-103
경찰공무원 계	<u>1,217</u>	<u>1,117</u>	-100
·	·	·	
·	·	·	
치안감	<u>12</u>	<u>11</u>	-1
경무관	<u>4</u>	<u>6</u>	+2
총경 이하	<u>1,198</u>	<u>1,097</u>	-101
일반직 계	<u>709</u>	<u>706</u>	-3
·	·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u>1</u>	<삭 제>	-1
4급 또는 총경 이하	<u>685</u>	<u>683</u>	-2
·	·	·	
·	·	·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4,207</u>	<u>134,309</u>	+102
경찰공무원 계	<u>129,825</u>	<u>129,925</u>	+100
·	·	·	
치안감	<u>18</u>	<u>19</u>	+1
경무관	<u>76</u>	<u>74</u>	-2
총경 이하	<u>129,726</u>	<u>129,827</u>	+101
·	·	·	
·	·	·	
일반직 계	<u>4,360</u>	<u>4,362</u>	+2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4,325</u>	<u>4,327</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1